

대구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3252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32525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가소2513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4. 8. 14.

판결 선고 2024. 9. 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가소251344 판결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통신사 대리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유무선 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중간도매업자이다.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직원인 F은 2022. 10. 8. 피고의 'E'을 판매점으로 하여 원고를 통해 D을 거쳐 C의 유무선 통신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22.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포함하여 1,794,200원을 송금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상품 가입 이후 7개월 동안 유선 상품(인터넷과 TV) 요금을 1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상품은 직권 해지되었다.

라. D은 원고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이 사건 상품의 가입유지기간(369일) 조건 위반으로 인한 '패널티' 1,280,000원을 차감 정산하여 그 금액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판매점인 피고에게 가입유지기간 준수를 조건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F의 요금 미납으로 유선 상품 부분이 그 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직권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D에서 받을 판매 수수료에서 '패널티' 1,280,000원이 차감 정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통신사에서 나온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F에게 지급하였으므로 F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통신사의 불합리한 환수정책이 부당하며, 거래관례상 환수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모든 책임을 판매점에 전가하여 수수료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가입기간 유지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고,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G에서 2023. 5.부터 같은 해 7.까지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위 1,280,000원이 '패널티'로 차감되어 이를 환수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수수료 반환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규철

판사김준철

판사김승섭